

대구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2가단1045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1. 피고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24.자 체결된 증여계약을 금 8,696,06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8,696,063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남근욱

#별지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지위

원고 (주)A 는 아래와 같은 계약에 의하여 본계약에 따른 채권의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수하였으므로 원 채권자는 (주)A 입니다.

아 래

채권자	채무자	채권 발생 일자	채권 내용	비고
(주)D	(주)A	2021. 12. 30.	자산매매계약	

2. 원고와 소외 C 의 약정내용

소외 C 은 신청의 (주)D 와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아 래

계 약	대 부 금 액	약 정 일 자	비 고
대부거래계약	금 7,000,000원	2020. 12. 7.	

3. 소외 C 에 대한 원고의 채권액

이후, 소외 C 은 이건 양수금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제때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채권자는 소외 C 에 대하여 2022. 2. 10. 현재 다음과 같은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음

(단위 : 원)

미 수 연 금	이자등 / 실비	합 계	연체이율
6,986,191	1,709,872	8,696,063	24.0%

4. 피고와 소외 C 과의 관계 및 사해행위의 성립

가. 소외 C 은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의 재산인 이건 부동산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신의 모친인 피고와 2021년 2월 24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 24일 대구지방법원 영전등기소 접수 제 4630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위 증여계약 당시 이전에 소외 D 의 대부 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소외 C 은 그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모친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위와 같이 소외 E 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역시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추정되어,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약의 수익자로서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판 2001다32533)”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채권자가 파악한바로는 소외 C의 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도 본인의 소유가 아니며, 채권자의 확인 가능 범위내에서 이 사건의 보전대상인 부동산이 그의 유일한 재산으로써,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해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해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압류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는 가액배상청구권만을 가지게 되어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5. 피고와 소외 C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

수익자 및 전속자인 소외 C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이건 부동산은 소외 C의 지분이 이전된 이후 근저당권이 이전 되었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6. 맺음 말

따라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 중 금 8,696,063원 상당액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8,696,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원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 원상당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끝.

별 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영천시

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42.9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상북도 영천시

대 463㎡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비율 : 1. 463 분의 22.930

